

●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5-30호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출입통제 등)에 따라 지정된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출입통제 구역 위반자에 대하여,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(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-24호) 기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의 사유로 연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5년 10월 23일

태안해양경찰서장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기간연장

1. 공고대상

가. 인적사항: 정0진(79년생, 경기도 안산시 소재)

나. 근거법령 및 처분원인

- 1) 근거법령: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출입통제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
- 2) 처분원인: 2025.7.16.(수) 09:56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진입
- 3) 부과내용: 과태료 200,000원 * 기한 내 납부시 160,000원

2. 공고기간 연장 사유: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(의견제출) 공고기간(공고기한: 2025.10.10.)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(9.26)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열람 불가, 이에 따라 접속 불가기간(9.26.~10.10./15일)을 반영하여 시스템 복구 후 공고 게시일로부터 15일간 공고 기간을 연장합니다.

※ 기존 공고기한: 2025. 10. 10.(금) /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-24호

3.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기한

가. 제출기한: 2025. 11. 6.(목)

나. 제출방법: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(의견제출서) 제출

다. 제 출 처: 등기우편(충남 태안군 동백로 92-13,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), 팩스(☎041-950-2948), 전자메일(lyj1354@korea.kr)

4.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

가. 납부방법: 우리 서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(☎041-950-2548)

나. 수납기관: ①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, ②인터넷지로(giro.or.kr), 인터넷 뱅킹(국고금 계좌) 등으로 납부

5. 안내사항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,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
나.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, 지방세 체납 처분의

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.

다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.

라.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(☎041-950-254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